

전자적기록, 전자문서의 변조등에 대한 처벌



申瑛澈 (법제처 법제연구관)

전자적기록 전송의 중요성

고도정보화사회에서 각종 의사전달 수단으로 전자적문서거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서류없는 사회”(paperless-society)를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복잡다기화한 산업사회, 그리고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한 이 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EDI 시스템의 개발과 정착으로, 정부행정이나 기업단의 업무처리 등 모든부문에서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종래 문서전달의 형식으로 보면, 전국 지방행정기관을 상대로 발송할 시급하고 중요한 행정지시(예규, 지침 등)가 각 시·도로 보내는데 3~4일이 소요되며, 시·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이·동으로 거치는 과정은 적어도 20일이 소요될 것

이다.

더구나 문서의 접수, 결재 및 하급기관에 발송을 위한 발송문의 작성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까지 따지면 최소한 1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TV나 신문등에서 보도된 내용이 일선행정기관에서 시행치 아니하여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하면, 상부기관으로 부터 정식 “지시공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공장건설, 중소기업 등의 창업관계, 기타 수출입등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민원업무들이다.

이와같은 현행의 제도는 시간적·경제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EDI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다.

즉 전국의 행정기관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진다면 중앙에서 발송한 전자적문서형식의 “공문서”(공문서의 개념중 전자적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음, E사무관리규정 제2조)가 전국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접수, 전달되어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하게 된다.

즉,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국

민에게 크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 만큼 국가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무역업무자동화등 EDI시스템도입 입법례

정부에서는 '91년도 정기국회에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종래의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은 무역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비용·시간 및 인력이 소요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문서(EDI)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 법률(안)을 종전의 무역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역절차를 문서화 처리할 경우, 수출입 절차 통관관계등 각종의 신청이나 승인 등에 있어서 수십종의 문서, 수십개 기관의 경유등 많은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됨은 물론 쓸데없는 행정규제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경쟁상대국들은 이미 EDI시스템에 의하여 무

역업무가 자동화되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적절한 법률안이라고 보겠다.

전자적기록 변조등 컴퓨터범죄 방지책 강구

정보네트워크사회에서 정보전달의 방법이 신속성·대량성·광역성은 크게 인정받고 있으나 항상 역기능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변조,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무역관계서류를 전송하는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가 변조되거나 처리·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 위조사용등으로 무역업무처리질서를 혼란시킨다면, EDI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나라 무역업무는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네트워크시스템에 접근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범위가 대량화되어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주요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컴퓨터범죄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형법등으로 중벌로 처벌하고 있다.

정보네트워크사회에서 정보전달의 방법이 신속성·대량성·광역성은 크게 인정받고 있으나 항상 역기능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변조,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망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변조,
위조, 또는 악용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특정공공기관이나
특정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미치게 된다.

전자적기록 변조등의 처벌

일본에서는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하여 1987년 6월2일 법률 제 52 조로 형법을 개정하였음을 이미 소개한 바(본지 91. 10 월호) 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전자적기록」에 대한 파손 변조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공무소(공공기관)에서 쓰임으로 제공되는 문서 또는 전자적기록을 훼손(파손 또는 변조)한 자는 3월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일본 형법 제 258 조).

-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전자적기록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일본 형법 제 259 조).

위에서 “공공기관에서 쓰임으로 제공되는 전자적기록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보관하거나 통신회선등을 사용하여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적기록(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매체에 수록된 기록내용)을 말한다.

예컨대, 자기테이프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주민등록표화일(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 7 조의 2), 자동차등록화일(자동차관리법 제 6 조), 기타 특허등록화일, 토지관리(지적)화일등을 들 수 있는바, 우리나라 현행법

에서도 이와 같은 전자적기록을 관련법률에서 각각 공정증서원본 또는 공문서로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 또는 전자적기록을 파손, 변조하여 못쓰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기업, 회사등 사적인 전자적기록에 대하여서도 무거운 형벌을 과하도록 하였다.

서독의 경우도 1987년 3월에 형법을 크게 개정하면서 「— —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권한없는 작용을 통하여 데이터처리 과정의 결과에 개입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서독 형법 제 263 조의 2).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전자적기록의 파손, 변조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들 전자적기록의 변조행위가 곧 데이터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임으로 일본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다.

전자문서(EDI) 변조범죄의 처벌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번 '91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 18 조(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①누구든지 지정사업자, 무

역업자, 무역유관기관 및 대행 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무거운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 225 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공공기관)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무역자동화법(안)에서도 무거운 형벌(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을 과할 뿐 아니라 1억원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무역자동화망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EDI)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는 공무소(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와 동일한 비중으로 인정하고

위조, 변조, 악용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무역자동화망에서 전송되는 각종의 문서(또는 정보)등은 물론 공문서의 성격을 지닌 것은 있겠지만 대부분 민간 무역업자간에 거래되는 정보로서 사문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법에서는 사문서의 위조, 변조에 대하여서는 5년이하 징역(형법 231조)에 처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양형상의 크게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1년이상 10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의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역자동화망이 국민경제 발전과 매우 관련이 깊고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는, 컴퓨터망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변조, 위조 또는 악용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종래의 수작업인 공문서·사문서와 같이 특정공공기관 또는 특정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그 피해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데 있어 강력한 방지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대응방안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은 각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부문에서도, 수천년간 내려왔던 이론이나 정착되어진 관행들이 크게 바뀌고 있다.

다음호에 상세히 고찰하겠지만, 무역자동화법에서 전자문서(EDI)의 효력 및 증거능력 부여, 송달시기등(동법 제 13조 ~17 조)이 그 대표적 예라고 보겠다.

고도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어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들 제도들을 학문적으로나 실무적 차원에서도 깊게 연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법제도면에서의 미비점을 미리미리 찾아내어 더 큰 시행착오나 비능률적인 요소가 없도록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화사회에서의 법제개선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종래의 묵은 전통적인 법규제나 법이론이 첨단 과학문명의 발달을 저해하기도 하는 반면에, 지나치게 앞서거나 서둘러서 제정된 법제가 기존의 법질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괴리현상이 생겨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